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8
----------	-----

발의연월일 : 2024. 5. 31.

발의자 : 이경숙, 김영실, 이상기,
박윤옥, 박경원, 조성대,
김동훈, 한근수, 이수련,
전혜연, 손정자, 한송연

1. 제안 이유

장시간 스마트기기 사용 및 학업 등으로 인한 불균형 체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남양주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예방교육 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예방교육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개선 활동과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위탁)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제4호

-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수수료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구 분	검진 대상자 수	소요액	산출근거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수수료	5,761명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수의 80%)	28,805천원 (시비100%)	검진수수료 5,000원×5,761명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
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